#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2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이달희

권영세 · 최보윤 · 김석기

주호영 · 김소희 · 강승규

김승수 · 고동진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4년에는 8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5조원"을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 및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 의 지정 등) ① -----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 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 총생산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하는 금액-----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 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 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 <u>(6)</u> ----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만분의 25 및 국내총생산

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	<u>액의 1천분의 5</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